

의안번호	2219719
의 퇴 인	임종득 의원
회 답 일	2026.9.3.
추계번호	26B3347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의7 (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참 여 지원) 신설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7조의7(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참여 지원) 신설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
2. 상세 사유

- 현행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조직화·규모화를 통해 농업 생산비용 절감, 품질 제고, 농가소득 향상 등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

1) 「농어업경영체법」

제27조의3(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·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.

□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농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시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, 아직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 촉진을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, 법인 중심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“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”²⁾을 추진 중이며,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공동영농 관련 사업이 확대되거나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 촉진을 위한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,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 -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논밭의 규모화,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공동영농법인 대상 맞춤형 지원(기반정비, 시설장비 등)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

[표]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개요

-
- 사업내용: 농업경영체(농가)의 조직화농지임대(또는 출자)운영규약경영개선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, 기반정비, 시설·장비, 마케팅·판로 등 지원
 - 지원대상: 공동영농 요건³⁾을 충족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 - 총사업비: 공동영농법인별 20억원(국비보조율 50%, 지방비 40%), 1년차 연부율 40%, 2년간 지원
 - 2026년 예산: 25억 5,500만원(자치단체 경상 보조)
-

※ 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

2)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(코드: 3033-369)의 내역사업

3) 공동영농면적 20ha 이상, 지역 농업인 5인(법인 설립 시 출자자 제외) 이상 참여

- 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Ⅳ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

참고1

2026년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 개요

* 세부사업명 : (농안기금)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/ 내역사업명 : 공동영농확산지원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□ **(사업목적)** 논(쌀 제외 타작물)·밭의 규모화,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

○ 공동영농모델 성공 사례 창출확산을 통해 농업구조 개선 촉진에 기여

* 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(법인 중심 공동영농·규모화 및 이모작을 통해 농업생산성, 농업생산액, 농가소득 증가) 등의 성공 사례 확산

□ **(사업내용)** 농업법인 중심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종합 지원

○ 소규모 농가(경영체)의 조직화 및 농지임대(또는 출자) 관련 교육·컨설팅, 규모화·이모작 등을 위한 대규모 시설·장비 지원 등

□ **(지원자격)** 공동영농 요건을 충족한 농업법인

○ 생산면적이 일정규모* 이상이면서 지역 농가의 농지 임대 또는 혼합형(농지 임대+농작업 위탁), 주주형(농지 출자) 공동영농모델

* 공동영농면적 20ha, 참여농업인 수(법인 조합원 이외) 5명 이상

— 농지 임대 또는 농작업 위탁 등 지역농가(농업인)의 참여가 있는 농업법인에 한함(농업법인 단독 영농 시 배제)

□ **지원 기준**

○ 예산 규모 : 2,550백만원

— 시설·장비 지원 : 2,400백만원, 국고 50%, 지방비 40, 자부담 10

* 지원기간(연부율) : 2년(1년차 40%, 2년차 60%)

— 성과관리·교육홍보 : 150백만원, 국고 100%(사업자 선정 및 평가 등)

□ **대상자 선정**

○ 경영체 역량, 지원 적정성, 사업추진 계획을 고려하되, 선정기준에 따라 산·학·연 등 전문심의단 심의를 거쳐 선정

* 세부사업명 : (농특회계) 공동영농확산지원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□ **(사업목적)** 논·밭의 규모화,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

○ 공동영농모델 성공 사례 창출확산을 통해 농업구조 개선 촉진에 기여

* 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(법인 중심 공동영농·규모화 및 이모작을 통해 농업생산성, 농업생산액, 농가소득 증가) 등의 성공 사례 확산

□ **(사업내용)** 농업법인 중심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종합 지원

○ 소규모 농가(경영체)의 조직화 및 농지임대(또는 출자) 관련 교육·컨설팅, 규모화·이모작 등을 위한 대규모 시설·장비 지원 등

□ **(지원자격)** 공동영농 요건을 충족한 농업법인

○ 생산면적이 일정규모* 이상이면서 지역 농가의 농지 임대 또는 혼합형(농지 임대+농작업 위탁), 주주형(농지 출자) 공동영농모델

* 공동영농면적 50ha, 참여농업인 수 25명 이상

－ 농지 임대 또는 농작업 위탁 등 지역농가(농업인)의 참여가 있는 농업법인에 한함(농업법인 단독 영농 시 배제)

□ **지원 기준**

○ 예산 규모 : 22,750백만원

－ 법인지원 : 21,600백만원(국고 50%, 지방비 40, 자부담 10)

* 지원기간(연부율) : 2년(1년차 40%, 2년차 60%)

－ 행정경비 : 1,150백만원, 국고 100%(사업자 선정 및 평가, 성과관리 등)

□ **대상자 선정**

○ 경영체 역량, 지원 적정성, 사업추진 계획을 고려하되, 선정기준에 따라 산·학·연 등 전문심의단 심의를 거쳐 선정